

◆ 지진계 · 풍량 풍속계 · 가속도계 수리 또는 교체 업체 선정 ◆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에 따라 당 아파트 ‘103동 지진계 수리’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단지개요

- 1) 단 지 명 :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
- 2) 소 재 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
- 3) 단지규모 : 3개동 1,788세대 (건축연면적 16,936.1124㎡)
- 4) 사용승인일 : 2011년 11월 30일

2. 입찰내역

- 1) 공 사 명 : 103동 지진계 · 풍량 풍속계 · 가속도계 수리 또는 교체 업체 선정
- 2) 공사범위 : 가. 103동 지진계 · 풍량 풍속계 · 가속도계 수리 또는 교체 후 정상 가동
나. 지진계 고장에 따른 해운대구청 행정조치 시정 이행 가능한 조치
- 3) 유의사항 : 개별 현장방문 후 작업 난이도 판단하여 확인(공사 범위, 설치 등 세부내역은 개별 현장 방문 확인 바람)하여야 하며,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 업체의 책임으로 간주 됩니다.

3. 입찰 참가 자격

- 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(참가자격의 제한)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나.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 및 허가업체

4.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(국토교통부고시 “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”을 적용)

: 일반경쟁입찰 / 최저가 낙찰 / 전자입찰(www.k-apt.go.kr)

5.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(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함)

- 1) 제출서류(모든 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.k-apt.go.kr에 파일화하여 순서대로 등록)
 - ① 입찰서(부가세 별도) 1부
 - ② 견적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 1부
 - ③ 입찰 보증금(입찰금액의 5% 이상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) 1부
 - ④ 계측 시스템 설치 전문 업체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증 사본 1부
 -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⑥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은 주민등록 등본) 1부
 - ⑦ 작업 계획서 1부
 - ⑧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 - ⑨ 행정처분 확인서(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) 1부
※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하고, 유효기간 경과시 서류 미비로 봄.
※ 제출서류가 누락된 업체는 자격 미달로 본건 입찰에서 제외됨.
- 2) 제출방법
 - ① 접수마감 : 2026년 7월 31일 17시까지
 - ② 접수방법 :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.k-apt.go.kr 전자입찰(파일로 등록)

6. 개찰의 일시 및 장소

- 1) 개찰일시 : 2026년 7월 31일 18시(아파트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)
- 2) 개찰장소 :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
- 3) 낙찰방법 : 최저가 낙찰자를 결정(낙찰업체 별도 유선 통보)
※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

7. 입찰의 무효: 국토교통부 고시 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”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(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)

8. 입찰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

- 1)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공고, 국토교통부고시 및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 후 응찰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- 2) 입찰 내역 및 입찰 목적과 적합한 업체가 없을 시 유찰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3)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업체간 담합 판정시 계약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
- 4)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
- 5)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금지함
- 6) 하자보수보증금 : 계약상대자 준수사항
 - ①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” 및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 “에 따른 계약금액의 10%로 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함
 -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(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) 하여야 함
- 7)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(국토교통부고시) 제2024-196호 제31조에 따름 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함.
- 8)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:(☎051-744-93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0일

(주)우리관리 노병용, 김영복의 대리인
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생활지원센터장 (직인 생략)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(제8조제1항 관련)

입찰서			
*참가번호		입찰명칭	지진계 · 풍량 풍속계 · 가속도계 수리 또는 교체 업체 선정
입찰가액	금 원정 (₩)		
입찰보증금	금 원정 (₩)		
위와 같이 입찰보증금(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)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. 년 월 일			
입찰자			
상호(성명)			
* 대표자	성명		
법인등록번호 (개인은 생년월일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(전화번호)			
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생활지원센터 귀중			
기재방법	*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